제64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5. 11. 10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’25. 11. 10. (월)

○ 출석위원(6명)

- 오균 행정사회분과위원장(주재)

- 민간위원 : 박선규, 이민창, 이인호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2025-406	행정안전부	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	심의안건

Ⅲ. 회의 결과

○ (심의) **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**(행정안전부, 2025-406호)

<table>
<tr><td>소관 부처</td><td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규제사무명</td><td>기업재난관리사 자격관리 기준 신설 (안 10조의2 신설)</td></tr>
<tr><td>논의내용</td><td>○ 개정안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△결격사유, △부정행위 제재, △자격대여 금지, △자격 취소 등의 자격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 용 (안 제10조의2)</th></tr>
<tr><td>결격사유</td><td>▸(대상) 피성년후견인,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(제2항)</td></tr>
<tr><td>부정행위 제재</td><td>▸(대상)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응시, 시험에서 부정행위
▸(제재)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, 시험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리된 자는 3년간 응시 제한 (제3항)</td></tr>
<tr><td>대여 금지</td><td>▸(대상)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및 알선행위 (제4항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자격 취소</td><td>▸(의무 취소)</td><td>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, 결격사유 해당(피성년후견인,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), 자격을 대여한 자 (제5항 제1호~제3호)</td></tr>
<tr><td>▸(취소 가능)</td><td>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 (제5항 제4호)</td></tr>
</table>
○ 자격의 전문성 확보 및 사회적 질서·신뢰 유지를 위한 △결격사유·△부정행위 제재·△대여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은 적정성이 인정되나,
○ △자격 취소를 규정한 것은 사안의 경중·동기·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정제재 할 수 있도록,
- 일정 기간을 정해 “자격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”하는 것이 타당</td></tr>
<tr><td>위원회 결정 내용</td><td>○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△결격사유, △부정행위 제재, △자격대여 금지는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
○ 다만, △자격 취소 외에 일정 기간 자격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</td></tr>
</table>